

2024학년도 서울장신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

I.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

구분	전형구분	입학전형	모집계열(단위)*	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(○, X)	대학별고사 유형**					교과 교육과정 *** 관련 여부 (○, X)
					논술 등 필답고사	면접· 구술고사	실기· 실험고사	교직적성 ·인성검 사	기타	
수시	학생부 교과	일반전형	인문계열	X						X
		대안학교	인문계열	X						X
		교역자추천자	인문계열	X						X
		담임목사추천자	인문계열	○				○		X
		만학도	인문계열	○				○		X
	학생부 교과 (면접중심)	일반전형	인문계열	○				○		X
		대안학교	인문계열	○				○		X
		교역자추천자	인문계열	○				○		X
		만학도	인문계열	○				○		X
	실기 위주	일반	인문계열	X			○			X
정시	실기 위주	일반	인문계열	X			○			X
학생부 교과	학생부 교과	특수교육대상자	인문계열	○				○		X
		농어촌학생	인문계열	X						X
		특성화고교출신자	인문계열	X						X
		특수교육대상자	인문계열	X						X
	학생부교과 (면접중심)	특수교육대상자	인문계열	○				○		X
		실기위주	농어촌학생	인문계열	X			○		
	특수교육대상자		인문계열	X			○			X
	재외국민과 외국인	-	인문계열	○				○		X

II.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

(1)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

구분	점검 사항		점검 결과
법령 이행	교칙	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?	○

	위원회 구성	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?	0
	결과 공개	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?	0
영향평가 시행 범위	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?		0
자체평가	대학별고사 출제·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,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?		0
결과 분석	분석 범위	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?	해당없음
	작성의 충실성	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?	해당없음
	현황표	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히 작성하였는가?	해당없음

(2)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

구분	전형구분	입학전형	모집계열(단위)*	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(○, X)	대학별고사 유형**					교과 교육과정 *** 관련 여부 (○, X)	영향평가 실시결과 *
					논술 등 필답고사	면접·구술고사	실기·실험고사	교직적성·인성검사	기타		
수시	학생부 교과	일반전형	인문계열	X						X	준수
		대안학교	인문계열	X						X	준수
		교역자추천자	인문계열	X						X	준수
		담임목사추천자	인문계열	○				○		X	준수
		만학도	인문계열	○				○		X	준수
	학생부 교과 (면접중심)	일반전형	인문계열	○				○		X	준수
		대안학교	인문계열	○				○		X	준수
		교역자추천자	인문계열	○				○		X	준수
		만학도	인문계열	○				○		X	준수
	실기 위주	일반	인문계열	X			○			X	준수
정시	실기 위주	일반	인문계열	X			○		X	준수	
학생부 교과	학생부 교과	특성교육대상자	인문계열	○				○		X	준수
		농어촌학생	인문계열	X						X	준수
		특성화고교출신자	인문계열	X						X	준수
		특수교육대상자	인문계열	X						X	준수
	학생부 교과	특수교육대상자	인문계열	○				○		X	준수

(면접중심)										
실기위주	농어촌학생	인문계열	X			○			X	준수
	특수교육대상자	인문계열	X			○			X	준수
재외국민과 외국인	-	인문계열	○				○		X	준수

Ⅲ.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

가.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

- 본 대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해 대학 자체 규정이 있으며, 상세 규정은 부록 참조

나.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 조직 구성

No.	구분	성명	소속	직책
1	위원장	조광호	입학지원처	처장
2	내부위원	류삼준	신학과	학과장
3	내부위원	차유림	사회복지학과	학과장
4	내부위원	안명숙	상담심리학과	학과장
5	내부위원	주 진	실용음악과	학과장
6	외부위원	이진용	초월고등학교	교사

다.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·절차

-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 기간: 2024년 3월 21일(목)

Ⅳ.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

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·검토위원		전체 위원	교수 위원	교사 위원 (일반고 교사위원)
전형 및 모집계열	출제위원	6명	5명	1명 (1명)
	검토위원	6명	5명	1명 (1명)

출제 전, 직전 입학년도 자체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자체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에 따라 출제위원들이 심의하여 출제함. 출제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점검·분석하며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 문항을 재평가하여 출제에 반영함. (현재까지는 변경 사항 없음.)

Ⅴ.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

2024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, 본 대학교의 면접고사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으며, 2025학년도 입학전형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면접고사를 진행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준수를 이행해 가기로 함.

부록

서울장신대학교 자체평가규정

제정: 2009. 5. 1.

개정: 2018. 6. 1.

개정: 2018. 9. 1.

개정: 2020. 7. 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자체평가”라 함은 교육단위별 교육목표, 특성화, 교육여건 및 재정, 연구, 사회진출도, 국제화, 재학생 만족도, 개선도 분야 등의 핵심평가지표에 대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“교육단위”라 함은「서울장신대학교학칙」상의 모집단위 학생정원표에 있는 학과(부)와 전임교원이 소속한 대학원 단위를 말한다.

제3조(평가대상)

- ① 평가대상은「서울장신대학교학칙」에서 정하는 교육단위를 말한다.
- ② 통·폐합된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교육단위에 통합하여 평가한다.
- ③ 신설되는 교육단위에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.

제4조(평가시기)

자체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, 수시평가는 자체평가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.

제2장 자체평가추진위원회

제5조(설치)

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서울장신대학교 자체평가추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은 전략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총무처장(직원대표), 성과관리센터장, 도서관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8.06.01.,2018.09.01.,2020.07.01.>
-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,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③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8.06.01>

제7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평가관련 기본방향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자체평가 심사
3. 대학자체평가서심사서 작성
4. 기타 자체평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8조(회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자체평가위원회)

- ① 평가관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8.06.01>
-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 하며, 회의를 총괄한다.<개정 2018.06.01>
-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영역별 연구위원과, 실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<개정 2018.06.01>
-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8.06.01>
 1. 평가지표 개발 및 보완
 2.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
 3.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
 4. 기타 평가 실무에 관한 주요사항
- ⑤ 자체평가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8.06.01>
- ⑥ 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8.06.01>

제10조(수당)

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연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8.06.01>

제3장 자체평가

제11조(자체평가지표 및 방법)

자체평가 지표 및 방법은 자체평가추진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자체평가 절차)

- ① 전략기획처는 평가 실시 전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평가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 평가편람 및 평가계획을 통보하면 각 관련부서에서는 자료제출 등 평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평가계획에 의하여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.

제13조(결과의 활용)

총장은 자체평가추진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부여, 포상,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4조(평가결과의 공시)

총장은 대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행지침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체평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